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95. 5. 10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운영과 청결관리와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 불결하고 시설정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시정,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명령 미이행자에게 행정제재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화장실을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제정근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규칙
(내무부 중앙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준칙)

3. 주요골자

- 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의 상태유지 및 책무부여 (안 제 3조)
- 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안 제 4조)
- 다.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관리 기준 규정 (안 제 5조)
- 라. 공중화장실 이외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운영 (안 제 12조)
- 마. 군수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 14조)
- 바.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화장실에 대하여

여 군수 승인 아래 유료화 가능 (안 제 16조)

사.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안 제 18조)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다음과같이 제정한다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시설지역

10.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11. 관광진흥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전문휴양.종합 휴양 시설
12. 기타 군수가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 2 장 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센티미터 이상, 세로 115센티미터 이상 (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수세식일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롤러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여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시설)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 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 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3 장 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의 설치
2. 비누 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및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 1회 이상 도색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상황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 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4 장 시설개선명령

제13조(시설점검)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제5조 및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2회(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개선명령) 군수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및 제8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청결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 ①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개선명령이행서를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유료화장실의 승인

제16조(유료화장실의 승인)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내의 화장실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담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정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군수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할 수 없다.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가 제1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과

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이의제기 및 강제징수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그 중에서 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나.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근거조항	부과금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제5조			
가.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20	40	60
나. 제5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10	20	30
2. 관리인의 미지정 및 청결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때	제8조	10	20	30
3.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지 아니한 때	제9조	10	20	30
4.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기준에 위반한 때	제10조	20	30	50
5.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제17조제2호 내지 제4호)을 위반한 때	제17조	20	30	50

[별지 제1호서식]

(四)

의 도

- 관리번호 : 읍·면별 일련번호 부여
- 지역구분 : ①터미널 ②시장 ③역 ④공·원 ⑤유·원지 ⑥문화재 ⑦도로변휴게소
⑧시가지 ⑨주유소 ⑩항·포구 ⑪선착장 ⑫운동장 ⑬기타
- 관리주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공단, ○○조합, ○○번영회, 개인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중 화 장 실 개 선 명령 서			명령서 번호 제 호
수 명 인	화장실소재지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개선명령사항			
개선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명령을 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공 중 화 장 실 개 선 명령 이 행 서			처 리 기 간 5일
제 출 자	화장실소재지 성명(대표자) 주 소		
	개선명령사항 개선이행사항		
개선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 하였기에 이행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 없음			

[별지 제4호서식]

유료화장실승인신청서					처리기한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설현황	소재지			관리주체		
	전담관리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다른법령에 의한 화장실 설치의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내역	면적규모	㎡		이용인원(일평균)	명	
	대변기	남	여	소변기	개	
		개	개			
	편의시설 · 용품	세면기	에어 타월기	환풍기	화장지 유	비누 유
1회 사용료	원					무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날인 또는 서명)						
화 순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div style="float: right;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수수료 없음</div>						
1. 유료화장실 운영계획서(운영시간·사용요금 등 명시) 1부 2. 화장실의 설치장소 및 내부구조도 1부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승인 제

호

유료화장실승인서

대 표 자	상호(명 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담 관 리 인	(전화번호 :)			
설 치 장 소				
시 설 내 역	대변기		소변기	
	남	여	개	
	개	개		
	세면기	에어타월기		환풍기
1회 사용료	원			

화순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인

(별지 제5호 서식 뒷면)

(변경사항)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처분의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화순군금고(농협중앙회 화순군 지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인

[별지] 7호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

서지통부 납부 태과

서지통부 납료 과태

(개인통지용)

(수납을 향한 보관용)

(화수구보통부)(

낙세자용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	
의무자	주소 :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회순군공중화
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농협중앙회 회순군지부에 납부
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१०

二

수납은행 :

수납은행 :

화수구 수습(이)

10

수납일짜

수납일짜	화순군수	귀하
수납일짜	화순군수	귀하

제 호	회 계 연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		
의무자	주소 :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짜 (일)			

검토보고서

□ 조례명

-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 주요 내용

1.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의 상태유지 의무부여 (안 제 3조)
2.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안 제 4조)
3.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 유지. 관리 기준 규정 (안 제 5조)
 - 시설기준 : 공중화장실의 전체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대변기 8개 (남자용 3, 여자용 5), 소변기 5개 이상 설치 (다만 다른 병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는 예외)
 -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조례시행 2년이내 동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갖추어야 함. (부칙)
4.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군수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안 제 12조)
5. 군수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및 이행기간(1 ~ 3월)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 14조, 15조)
6.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화장실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얻어 유료화 가능 (안 제 16조)
7. 개선명령 이행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안 제 18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을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문기술인력이 구비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관리 운영할수 있다.

제 2 장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폐수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시켜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 시켜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미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6. 사업자는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평균 폐수배출량의 2배이상인 경우와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100미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 제9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유량계는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 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군수가 비용부담 및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토록 당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7조 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정을 받아야 한다.
- ⑥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수세식변소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내의 변소를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때에는 배수 7일전까지 별지 제 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 제12조(배수기준) 폐수배출 사업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항목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 3 장 시설설치비의 부담

제14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 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최초사업자"라 한다)
 2. 농공단지 입주당시의 분양부지면적 및 건물면적의 증가와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폐수 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5조(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배출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설치비의 부과) ① 군수는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후 30일 이내에 제1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납부고지한다. 이경우 납부기간은 최초사업자에 대하여는 응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분할고지하고 증설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고지할 수 있다.

- ② 납부일은 고지일 부터 10일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제17조(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 ①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증설사업자는 시설설치비의 납부 기간중 대상 사업장의 폐업으로 폐수배출이 중단 되었을 경우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지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18조(시설설치비의 재산정) 군수는 증설사업자에 대하여 폐수 배출시설의 신.증설 이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군수가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시 산정된 오염부하량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제 4 장 유지관리비의 부담

제19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사업자는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의거 매 2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정할 수 있다.

제20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군수가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당해월의 유지 관리비를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휴업등 비정상가동시 비용부담) 군수는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 가동 직전 3개월간의 실적 평균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으로 산정 한다.

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시 비용 부담방법에 의한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이상 휴업한 오수배출업소.

제22조(오.폐수량의 산정) ①군수는 비용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오.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월 범위내에서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 단서에 의한 유량계 설치의무 면제업소 및 배출업소에 대하여 용수사용량,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한 오수전환율 등에 의하여 오.폐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오.폐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자가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오.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3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사업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의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이의 신청) ① 이 규정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 제기로 그 부담금 액에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5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군수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정당한 부담금 그 외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0분의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6조(독 촉) 군수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다.

제27조(체납처분) 군수는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의 제출명령등)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년 연말까지 다음년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오.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처리구역 내에서 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0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필요한 경우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전에 미리 사업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31조(배수설비등 시설설치 의무 불이행) ① 군수는 제 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등의 시설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시 설 설 치 비 산 출 기 준

1. 부담기준 : 오수배출업소는 업소규모에 따라 부담하며 폐수배출업소는 업소규모와 폐수오염부하량에 따라 부과한다.

2. 적용공식

$$\circ AS = FC \left(a \times \frac{KI}{KT} + b \times \frac{LI}{LO} \right)$$

○ AS = 비용부담자가 분기별 또는 매년부담해야하는 개별 부담금

○ FC = 비용부담자가 분기별 또는 매년부담해야 할 금액

-초기 3년간은 매분기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응자금이자 총액

-3년 경과후 10년간은 매분기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응자금 중

원리금 및 이자 상환 총액

• $a = \text{오수배분률} \left(\frac{LT - LO}{LT} \right)$

• $b = \text{폐수배분률} \left(\frac{LO}{LT} \right)$

• $a + b = 1$

○ L : $\left(\frac{B + C}{2} + 1.3 \times S \right)$

(B:BOD, C:COD, S:SS)

○ LT : 전체입주업체의 오.폐수 배출 총오염부하량

○ LO : 입주업체중 배출업소의 폐수부하량의 합계로써 생활오수는 포함되지 않음

○ KI : 업소규모로서 다음서식에 의거 산출

$$K = 0.2 \times \text{부지면적} + 0.8 \times \text{건물면적}$$

○ KT : 전체입주업체 규모의 합계

○ KI : 개별입주업체의 규모

b : 처리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률

$$(= \frac{\text{처리요금}}{\text{유지관리비}})$$

c : 처리요금중 유량에 대한 배분률

$$(= \frac{\text{유량배분요금}}{\text{시설관리비}})$$

d : 처리요금중 BOD.COD 부하에 대한 배분률

$$(= \frac{\text{SS 부하배분률}}{\text{시설관리비}})$$

참고 : 세부산출방법

가) 업소별 폐수량 및 오염부하량(BOD, COD, SS)의 산정

- 폐수배출업소는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폐수량을 산정 적용한다.
- 배출폐수의 오염부하량은 정기적으로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농도를 적용하며, 분석시기, 회수등을 입주업체 대표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최대 발생폐수량을 (설계계획 최대량)을 적용한다.
- 극히 소량의 폐수를 배출하여 유량계 설치에 의한 유량산정 및 폐수 채취가 불가능한 업체는 동종업체의 폐수발생 원단위를 적용한다.

나) 업소별 오수량 및 오염부하 (BOD, COD, SS)의 산정

- 전체 오수의 배출량 및 그 오염부하는 공동오.폐수처리장 유입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에서 전체 배출량 및 그 오염부하량을 감한 값으로 한다.

$$\text{전체오수량} \times \frac{\text{업소별 생활용수 사용량(수도사용량)}}{\text{농공단지 전 생활 용수사용량(수도사용량)}}$$

또는

$$\text{전체오수량} \times \frac{\text{업소별 종업원 수}}{\text{농공단지 전 종업원 수}}$$

다) 기본요금 및 처리요금

구 분	내 용	배 분 률
유지관리비	기본요금 + 처리요금	$a + b = 1$
기 본 요 금	<p>소 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현장관리인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사무관리비 : 인건비 × 5% ○ 동력비중 기본요금 ○ 감가상각비 	$a = \frac{\text{기 본 요 금}}{\text{유지관리비}}$
처 리 요 금	<p>소 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수수료 ○ 동력비중 사용요금 ○ 약품비(재료비) ○ 오니처리비 ○ 시설유지보수비(수선유지비) 	$b = \frac{\text{처 리 요 금}}{\text{유지관리비}}$

- 기본요금 및 처리요금의 내용구분은 상기기준에 의거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업체의 대표자들과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라) 처리요금중 오.폐수량 BOD, COD, SS 부하에 대한 배분률(c,d,e)

구 분	내 용	배 분 률
시설 관리비	다음 각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운전요원 및 보조원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유지보수비, 동력비 중 사용료, 약품비 및 오니쳐분비의 합계	$c + d + e = 1$
유량배분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실 ○ 침사지, 유입펌프장 ○ 최초침전지 ○ 관리동 ○ 변전소 및 계상설비 ○ 조경 및 부대공사 	$c = \frac{\text{유량배분요금}}{\text{시설관리비}}$
BOD,COD 부담 배 분 요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침전지 ○ 폭기조 ○ 송풍기등 	$d = \frac{\text{BOD,COD 부담 배 분 요 금}}{\text{시설관리비}}$
SS 부담배분 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조 및 오니저류조 ○ 오니탈수기등 ○ 건조상등 기타 	$e = \frac{\text{SS부담배분요금}}{\text{시설관리비}}$

- c,d,e의 배분률은 환경관리공단의 설계예산서 및 도면에 의해 산정한 값을 입주업체 대표자들에게 승인시킨후 경한다.
 - 상기 시설물이 분리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능한한 기능별 분리하여 해당항목에 적용한다.
- * 기타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 산출방법에 필요한 자료는 환경관리공단 자료를 활용함.

(별지 제1호 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신청서

신고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⑤ 전화번호	
사업장	⑥ 사업장 명칭		
	⑦ 사업장 소재지	⑧ 전화번호	
	⑨ 업종	⑩ 주생산품	
	⑪ 착공 예정일	⑫ 준공 예정일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귀하

※ 구비서류※

1. 배수설비 설치내역서

가) 공사실시 설명서

나)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접속관계

다) 폐수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
량을 예측한 내역서

(별지 제2호 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

신고인	①상호또는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전화 번호	
사업장	⑥사업장 명칭		
	⑦사업장소재지	⑧전화 번호	
	⑨업 종		
	⑩설치 완료일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사용개시(중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일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시설 설치비 부담대상 신고서

신 고 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전화 번호	
	⑥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시설 설치비 부담 대상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일

화순군수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시설설치비 납부고지서(년분기)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199년도
세	입	과	목
납부부	업체명		
의무자	대표자		
납부금액	원금:	원금:	원금:
납부후금액	원	원	원
부과근거			

위와같이 공동오·폐수종합처리시설설치비 상환부담금을 고지하고
니년월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납기관
수납일자

화순군수

시설설치비 영수증(년분기)

(화순군청 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199년도
세	입	과	목
납부부	업체명		
의무자	대표자		
납부금액	원금:	원금:	원금:
납부후금액	원	원	원

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화순군수
김하

시설설치비 영수증(년분기)

(납부자 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199년도
세	입	과	목
납부부	업체명		
의무자	대표자		
납부금액	원금:	원금:	원금:
납부후금액	원	원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연 월 일
연 월 일
연 월 일

수납기관
(인)

유지관리비 납부고지서(년월분)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199년도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부부 의무자	업체명 대표자	납부부 의무자	업체명 대표자
납부금액	원	납부금액	원
납부후금액	원	납부후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배출량 BOD COD SS

m³/일 mg/1 mg/1 mg/1위와같이 공동오·폐수종말처리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수 수

수납일자

수납기관 (인)

수납기관

수납기관 (인)

년 월 일

회계년도

199년도

유지관리비 납부서(년월분)

(수납은행 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199년도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부부 의무자	업체명 대표자	납부부 의무자	업체명 대표자
납부금액	원	납부금액	원
납부후금액	원	납부후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부과근거

위와같이 공동오·폐수종말처리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수 수

수납일자

수납기관 (인)

수납기관

회계년도

199년도

년 월 일

회계년도

199년도

유지관리비 영수증(년월분)

(화순군청 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199년도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부부 의무자	업체명 대표자	납부부 의무자	업체명 대표자
납부금액	원	납부금액	원
납부후금액	원	납부후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납부 합니다

회계년도

199년도

년 월 일

회계년도

199년도

유지관리비 영수증(년월분)

(납부자 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199년도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부부 의무자	업체명 대표자	납부부 의무자	업체명 대표자
납부금액	원	납부금액	원
납부후금액	원	납부후금액	원

(별지 제6호 서식)

독촉장				
구분	④ 체납금액	부담금	가산금	증가산금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소				
⑤ 시설설치비				
⑥ 유지관리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순군수 귀하

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및 비용부담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화순군 환경보호과(73-21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 조례명

-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 주요 내용

1. 폐수 등의 배출시설 설치 및 배출

- 농공단지내의 사업자는 사업장에 자체 오.폐수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발생된 오.폐수는 공동 오.폐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 (안 제 5, 6조)

2.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 배수설비의 공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된 도로 등 시설물을 원상 복구 책임 부여 (안 제 8조)

3. 유량계 및 수소이온 농도 측정계 설치 (안 제 9조)

-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
-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상. 하반기 각 1회 이상 계측기 정기적 점검 의무화

4. 사용 개시의 신고

-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때에는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 의무화 (안 제 11조)

5. 배출 허용 기준

- 수질환경보전법 제 8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생물학적 및 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 준수 (안 제 12조)

6.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부담

- 사업자는 오. 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및 유지관리비 부담 (안 제 14조, 19조)

7. 가산금 및 증가산금 부과

- 사업자가 각종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때에는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100분의 5) 및 증가산금 (1000분의 12) 부과하여 강제 징수 (안 제 25조, 27조)

8. 사용의 제한

- 군수는 필요한 경우 폐수관리의 사용을 제한 (안 제 30조)

9. 사업자가 배수설비에 필요한 시설 (유량계, 수질측정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군수가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 (안 제 31조)

제정 이유 (필요성)

- 동면 농공단지내에 설치된 공동 오.폐수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사업장별로 오.폐수 배수설비를 설치하게 하고,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및 유지관리비를 사업자가 부담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도모

검토 결과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수질환경보전법 제 25 ~ 27조 및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 13조 ~ 21조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코자한 것으로
- 절차상 (입법예고 및 군정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관계 법령을 위반사항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